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b>보 도 자 료</b>		
	<b>보도</b>	<b>2018. 8. 27.(월) 조간</b>	배포 2018. 8. 24.(금)
담당부서	자산운용검사국	김태성 국장(3145-7690)	김정태 팀장(3145-7620) 김효희 팀장(3145-7641)

**제 목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금융소비자 주의 필요!**

<b>■ 소비자경보 2018-6호</b>	
등급	<span style="background-color: orange; padding: 2px;">주의</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경고</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위험</span>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1 개요**

-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 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
  - \* '18.8.8~8.13. 기간 중 127건의 민원 접수
  -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 하였으나 대부분 손해를 보았으며
    - \*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예: 급등주)하여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
  - A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하였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
-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
  - \* 피해신고 추이(건) : ('14년) 81 → ('15년) 82 → ('16년) 183 → ('17년) 199 → ('18.1~7월) 152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며 주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매매하여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
- ② **(일대일 투자지문)** 유료회원에게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하거나 유료증권방송 회원에게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종목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등
- ③ **(수익률 과장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또는 미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 사용  
\* (사례) '1만% 폭등', 1년 최소 300%의 수익 가능 등
- ④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등)**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아님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쉬우나,
  -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
  - \*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업무의 종류·방법 등만 기재하면 신고요건 충족
  - 따라서 금감원 신고 업체라는 것이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거나 금감원이 인정한 업체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

## ②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및 계약 내용 확인 철저

- 수익률을 과장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살펴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 전문인력 보유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력이나 자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
- 또한 정보이용료 등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

## ③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피해예방이 중요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 가능
- 특히 일대일(1:1) 투자자문 또는 투자 일임을 받아 운용하는 것은 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④ 투자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

-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 결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이고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

## 4 피해발생시 대응방안

- (불법행위 신고) 투자자금 등의 보관·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생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 가입비 환불,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사법 절차를 밟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신고센터

### 1. 금융감독원 [금융법령상 불법행위 신고]

(전화) ☎ (02) 3145-7646, 7634, 7647, 7694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 2.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가입비 환불 관련 피해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http://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5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투자자 보호 및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점검\*을 수행하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

\* '17년 총 333개 업체에 대한 불법·불건전 행위 점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웹툰 등의 시청각 자료 게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허위 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실시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조언 업무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기관이 아님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진입	신고(영업요건에 대한 심사 없음)	등록(등록요건에 대해 심사)
명칭	○○투자클럽, ○○인베스트, ○○스탁, ○○주식연구소 (투자자문이란 명칭사용 금지)	○○투자자문
영업 형태	<u>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한 단순 투자조언만이 가능</u>	금융투자상품의 <u>가치</u>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u>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u> 에 관한 투자자문
업종	주로 통신판매업의 형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	금융투자업상의 투자자문업
서비스의 성격	일반 개인간 서비스 계약 (금융투자상품이 아님)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계약
전문성	별도의 전문인력 보유 요건 없음	최소 1인의 투자전문인력 보유 요건
투자자 보호 의무	금전 및 재산 보관·예탁 금지 금전 및 재산 대여 증개·주선 금지 수수료 외 추가 대가 수령 금지 선행매매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신의성실 및 투자자이익 우선 의무 투자권유의 적합성 원칙 투자권유에 있어 설명의무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